

## 항공 정비/부품산업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

인천 지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 제조업의 항공 정비/부품 산업 진출 및 성장을 지원코자 "항공 정비/부품산업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"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0년 9월 3일
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1

### 개 요

#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항공 정비/부품산업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
- 사업목적
  - 인천 항공기업의 항공 정비/부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항공산업 진출/성장 지원
  - 항공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부담 상쇄 및 사업화 지원으로 인천 항공 기업 성장 촉진
- 사업기간 : 2020년 9월 ~ 2021년 1월
- 사업내용
  - 항공 정비/부품 사업화와 관련도가 높은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 비용을 주관기업과 매칭하여 지원
  - 항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 및 일자리 유지/창출 효과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

2

사업별 지원내용

구 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· 주관기관 단독수행 또는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																					
수행기간	· 5개월 이내 (2020. 9. 21 ~ 2021. 1. 31)																					
지원규모	· 1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이내(시 지원금) - 평가결과 및 기간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																					
지원기간	· 5개월 이내 (4개월 3주) <b>※ 선정 기업의 지원 포기로 인한 재공고</b>																					
민 간 부 담 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/참여기관 부담금(현금+현물)은 총 사업비의 20% 이상</li> <li>· 주관/참여기관 부담금 내 현금비율은 60% 이상</li> <li>※컨소시엄 구성시 기관별 사업비에 따라 부담금 계상</li> </ul> <p>▷ 사업비 편성 예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지원금</th> <th colspan="3">민간부담금</th> <th rowspan="2">합계</th> </tr> <tr> <th>소계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액</td> <td>60,000,000</td> <td>15,000,000</td> <td>9,000,000</td> <td>6,000,000</td> <td><b>75,0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80.0</td> <td>20.0</td> <td>12.0</td> <td>8.0</td> <td><b>100.0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원금	민간부담금			합계	소계	현금	현물	금액	60,000,000	15,000,000	9,000,000	6,000,000	<b>75,000,000</b>	비율	80.0	20.0	12.0	8.0	<b>100.0</b>
구분	지원금			민간부담금				합계														
		소계	현금	현물																		
금액	60,000,000	15,000,000	9,000,000	6,000,000	<b>75,000,000</b>																	
비율	80.0	20.0	12.0	8.0	<b>100.0</b>																	
주관기관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기관 : 인천 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※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(법인)</li> <li>· 참여기관(해당시) : 관내·외 기업, 대학, 연구기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
기술료	· <b>해당사항 없음.</b>																				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기술이전</u> 받은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을 이전한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은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정 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전기술</td> <td>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실시계약이 완료된 기술* *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에 한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정 의	이전기술	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실시계약이 완료된 기술* *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에 한함																	
구 분	정 의																					
이전기술	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실시계약이 완료된 기술* *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에 한함																					

### 3

## 추진절차



## □ 공통사항

- (격년제 참여) 주관기관은 동일 내역사업에 2년 연속 신청 불가
  - ※ 2019년 항공 정비/부품/공정 사업화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기업 제외
  - ※ 2020년 사업 수행 시 2021년에 지원 불가
- (신규인력 채용시 가점 부여) 과제수행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가점 부여
  - ※ 신규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과제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학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
  - ※ 협약시 '신규인력채용(예정)확약서'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함
  - ※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신규인력은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. 단,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4촌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불가
- (상한제도 적용)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, 연구자는 최대 5개 제한
  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하여 연구개발 수행 과제 건수 점검
- (연구총량제 적용) 책임자의 최소 과제참여율은 30%,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
  - ※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,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미만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
- (수행기관) 과제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
- (주관기관) 총사업비(현금)의 60% 이상 사용
- (성과지표 설정) 연구성과 성과지표 중 의무지표의 경우 성과목표(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)별 최소 1개 이상 목표 지표설정
- (사전 중복성 검토) 주관기관은 기존 사업을 검토하여 신청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
  -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> 과제참여 > 유사과제
- (참여제한 여부 검토) 수행기관 및 책임자는 사업 신청 시 제재(또는 참여제한) 정보 검색결과를 제출해야 함
  -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> 과제관리 > 제재정보조회

## □ 지원제외

- 최근 3년간 정부/지자체의 R&D과제 3회 이상 수행한 기업은 신청 불가
- 사업공고일 현재 설립일이 6개월 미만인 기업
- 내역사업별 신청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및 기관 등
-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, 타 사업에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
-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,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전산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,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제재(또는 참여제한) 대상일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대표이사, 연구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 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  -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 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 1,000%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 인 경우
  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기관 또는 기업
-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기타 과제선정에 따른 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포함된 경우
  - 이행보증보험 발급불가 기업 등

## 5

### 가점 부여 및 사업비 구성

#### ○ 가점 항목

##### ① 추가대응자금 확보 : 최대 2점

시 지원금 대비 현금 매칭 비율	12% 초과 20% 이하	20% 초과
배 점	3점	5점

##### ② (필수채용 외)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: 최대 3점

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	1인	2인	3인 이상
배 점	2점	3점	5점

##### ③ 인천 항공 선도기업 지정 기업: 2점

## 6

### 과제 선정 평가 기준

#### ○ 선정 기준

- 항공 정비/부품/공정 사업화와 관련도가 높은 기술
- 관련 기업의 기술적 전문성 및 성장가능성
- 평가기준(안)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지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</li> <li>• 연구 목표 또는 목적 등 연구내용과 사업 정책의 부합성</li> </ul>	20
주관기관의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항공산업과의 연관성 및 성장가능성</li> <li>•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</li> <li>•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</li> </ul>	20
사업화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기술의 항공산업에서의 사업화/제품화 가능성</li> <li>• 인천 항공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</li> </ul>	30
기대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용 및 매출 증대</li> <li>• 사업 수행 이후 성과 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</li> </ul>	30
<b>합 계</b>		<b>100</b>

**7****사업관리 및 사업비 관리**

- 본 사업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비 편성,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인천 연구개발활성화사업 관리 지침 및 사업비 세부관리지침 준용

**8****신청 및 접수**

- 제공고기간 : 2020. 9. 3 ~ 9. 9 (7일간)
- 신청기간 : 2020. 9. 4 ~ 9. 9 17:00까지 (6일간)
- 신청방법 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Bizok시스템  
(bizok.incheon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
- 문 의 처 : 항공산업센터 노혜정 주임(032-260-0856) hjnoh@itp.or.kr

○ 제출서류

No	제 출 서 류 명	부수	비고
1	사업계획서 1부	1부	*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(국가 공모 대응예산 지원사업은 별도 양식 없이 국가 공모 사업계획서로 대체)
2	수행기관부담금출자확약서 1부 -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작성시 해당금액 활용계획을 명시	1부	
3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	1부	
4	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1부	
5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1부	
6	최근 3년간 재무제표 -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	1부	기업만 제출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1부	기업만 제출
8	4대보험 가입자명부	1부	기업만 제출
9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-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 받은 기업	1부	해당시 제출
10	가점항목 증빙서류 -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마감일 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	1부	해당시 제출
11	R&D 인프라 보유 증빙자료	1부	해당시 제출
12	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출원사실 증명원	1부	해당시 제출

○ 기타사항

- 내역사업별 신청서식은 인천테크노파크 및 bizok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-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되, 주관기관장(또는 연구책임자)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업로드할 것

- 별첨 : 1. 항공 정비/부품산업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1부.  
2. 인천연구개발활성화사업 관리지침 1부.